

서울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나4052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MF(변경 전 :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변론 종결 2019. 12. 19.

판결 선고 2020. 2. 1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09가합98114 판결

환송전_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3나148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6다5217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 계산표'의 '인용액'란 기재 해당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9. 9. 11.부터 2020. 2.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생활기본시설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② 임대주택건설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과 환송 전 이 법원은 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②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②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청구 부분에 제한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7면 제2행부터 제19행까지의 "(2)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의

의미 및 이주대책기준일의 확정"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의 의미 및 이주대책기준일의 확정

(가) 토지수용 절차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대상은 객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적용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이라고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그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11182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이 2003. 7. 9. 서울 강동구 MG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 도시개발법 제7조와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K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위 공람공고일인 2003. 7. 9.으로 판단된다.】

○ 제19면 제8행부터 제23면 제14행까지의 "다) 원고별 검토"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별 검토

(1)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법률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X, Z, AA, AB, AD, AE, AF, E, AJ, AK, AN, AO, AP의 경우, 위 원고들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니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서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구 공익사업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다툼다.

그러나 갑 제37호증의 142, 1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니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2002. 2. 28. KQ 외 1필지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2002. 8. 30.부터 2005. 7. 26.까지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니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 AS이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없어 이를 알 수 없다고 다툼다. 그러나 갑 제37호증의 312, 3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S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1996. 3. 20. K지구에 속하는 LM 외 1필지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2003. 4. 30.부터 2006. 12. 18.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S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법률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상 지위의 포괄적 이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의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이 별지 3 '양도현황표'의 '양수인'란 기재의 각 양수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면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해당 약정서에 날인하여 위와 같은 수분양자 지위 이전을 승낙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7, 44, 73, 7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3 '양도현황표'의 '부당이득채권 보유 증거'란 및 '채권양도통지'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각 양수인에게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면서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양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각 양수인으로부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다시 양도받고 위 각 양수인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7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E은 2011. 9. 30. F에게 수분양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 E이 갖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합의서는 2019. 12. 16.자 원고들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2019.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9. 12. 19. 제7차 변론기일에 원고 E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이 진술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법리를 더하여 보면, 원고 E은 F에게 수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분양계약을 둘러싼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이전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다시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실관계가 담긴 2019. 12. 16.자 준비서면 및 증거(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에게 송달 및 제출됨으로써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도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문제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은 모두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제23면 제15행부터 제40면 제11행까지의 "나.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에 한한다)"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친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금의 산정방식 및 기초자료

가) 부당이득금의 산정 방식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합계액 ×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지지분면적 / 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 대지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전체 대지면적)], ②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③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나) 산정의 기초자료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업구역의 총 개발면적은 891,412㎡이고, 이중 유상공급면적은 461,165㎡이고 무상공급면적은 430,247㎡이고, 총 개발면적에서 존치면적은 58,618㎡이고 이를 제외한 총 사업면적은 832,794㎡이다.

② 이 사건 사업 중 택지 조성과 관련한 총 사업비는 915,312,215,006원이고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직접비	용지비	605,792,519,237
용지부담금	2,899,332,820	

직접비	용지비	605,792,519,237
조성비	73,772,624,114	
기반시설설치비	76,505,042,000	
직접인건비	2,675,335,312	
이주대책비	5,411,999,607	
합계	767,056,853,090	
간접비	판매비	613,645,482
일반관리비	7,517,157,160	
자본비용	140,124,559,274	
기타비용	0	
총 사업비 합계	915,312,215,006	

2)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병합) 판결 등 참조].

3) 생활기본시설 해당 여부 및 그 비용에 관한 개별적 검토

가)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1)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용지의 면적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 $155,269.4\text{m}^2$ (총 도로면적 $159,122.4\text{m}^2$ - 존치면적 $3,853\text{m}^2$) 이고, 도로용지비는 112,946,348,060원 [= 총 용지비 605,792,519,237원 $\times$ 생활기본시설 도로면적 $155,269.4\text{m}^2$ / 총 사업면적 $832,794\text{m}^2$ (= 총 개발면적 $891,412\text{m}^2$ - 존치면적 $58,618\text{m}^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도로 용지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8,137,605,914원을 인정한다.

(2) 피고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귀속받은 부분은 총 용지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인 도로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중 일부가 피고에게 무상귀속 되었으나, 피고는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무상취득한 부분에 대한 취득비용을 0원으로 반영하였을 뿐, 총 용지비 산정 대상면적에서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를 제외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개별 토지의 취득비용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총 용지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하였고, 이러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사업이 없었더라면 기왕에 설치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종래에 설치된 위 시설들을 철거하고 다시 이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무상 귀속된 부분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다843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4641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74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합계 40,693,396,45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1	도로포장 및 축조 공사비	18,442,358,914	17,995,794,452
2	우수공사비	9,920,387,000	9,920,387,000
3	오수공사비	899,048,000	899,048,000
4	상하수도공사비	1,678,167,000	1,678,167,000
5	하수처리부담금	5,200,000,000	5,200,000,000
6	에너지 통신시설 설치비	5,000,000,000	5,000,000,000
합계	41,139,960,914	40,693,396,452	

(2)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 해당 여부에 관한 개별적 검토

(가) 도로포장 및 축조공사비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의 도로 전체 면적을 포장하고 축조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18,442,358,91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사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만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도로 포장 및 축조 공사비는 17,995,794,452원(= 18,442,358,914원 × 생활기본시설 도로 면적 155,269.4㎡ / 총 도로면적 159,122.4㎡)이 된다.

(나) 우수공사비, 오수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

우수공사비, 오수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가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하수처리부담금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하수처리부담금은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새로이 필요하게 된 간선시설인 상하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부담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담금은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에 해당한다.

(라) 에너지 통신시설 설치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에 설치함으로써 발생한 지중설치비와 가공설치비의 차액 5,000,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이 비용이 총 사업비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승인은 2003년경인데 당시에는 이미 전기시설의 지중화 설치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기시설의 지중화 설치는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0839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4641 판결 등 참조).

다)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등

(1) 직접인건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비 중 직접인건비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피고가 정한 직접인건비율 0.35%를 곱하여,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피고가 정한 판매비율 0.08% 및 일반관리비율 0.98%를 곱하여 각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비 중 구 공익사업법상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직접비 즉, 앞서 본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및 조성비에 위와 같은 각 일정 비율을 곱하여 피고가 지출한 것으로 계상된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가 108,137,605,914원,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가 40,693,396,452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직접인건비는 520,908,508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108,137,605,914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40,693,396,452원) $\times$ 0.35%], 판매비는 119,481,529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108,137,605,914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40,693,396,452원 + 직접인건비 520,908,508원) $\times$ 0.08%], 일반관리비는 1,463,648,727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108,137,605,914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40,693,396,452원 + 직접인건비 520,908,508원) $\times$ 0.98%]이 된다.

(2) 자본비용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 택지비 중 자본비용은 직접비의 일자별 지출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조성공사 준공일까지 자본비용율 4.84%를 곱하여 산정된 사실, 이 사건 총 택지비 중 직접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의 합계인 767,056,853,090원, 총 자본비용은 140,124,559,27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총 자본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자본비용은 27,283,337,087원[= 총 자본비용 140,124,559,274원 $\times$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의 합계 149,351,910,874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108,137,605,914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40,693,396,452원 +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직접인건비 520,908,508원) / 총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의 합계 767,056,853,090원]이 된다.3) (3) 소결론

그러므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등은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의 합계 29,387,375,851원(= 520,908,508원 + 119,481,529원 + 1,463,648,727원 + 27,283,337,087원)이 된다.

라) 이 사건 각 대지 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

(1) 이 사건 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합계 178,218,378,217원(생활기본시설 용지비 108,137,605,914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40,693,396,452원 +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직접인건비 등 29,387,375,851원)이고, 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 대지 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이 461,165㎡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386,453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178,218,378,217원 / 유상공급면적 461,165㎡)이 된다.

(2) 다음으로 이자 기산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에서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패소하였으므로 법정이자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 9. 1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설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인정하더라도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양도통지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그러나 갑 제37, 44, 73, 7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한 원고들은 각 그 양수인들과 사이에 피고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원고들이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등 각 양수인들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양도의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각 양수인들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원금 및 이자 일체를 양도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 9. 11.부터 법정이자 연 5%가 가산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이 사건 각 대지지분면적에 위 1m²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386,453원을 곱한 별지 2 '부당이득 계산표' 중 '인용액'란 기재 해당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 계산표' 중 '인용액'란 기재 해당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9.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2. 10. 16.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의 이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설범식

판사이재욱

판사김길량

별지

1) 존치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대로 존치시킨 부지로서,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무상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존치부지 면적은 총 사업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4641 판결)

2) 2016. 8.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6면 참조

3) 자본비용의 산정 기초가 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각 지출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도로용지비, 우수공사, 오수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자본비용은 위와 같이 총 자본비용을 총 직접비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직접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